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소 농장 구제역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조치

1.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와 관련됩니다.
2. '23.5.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소 농장의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관계기관(단체)별 특별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농장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소 사육농장(2호, 김0권, 이0호)

나. 충청북도 및 청주시(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 * 역학관련 농장 소재 해당 지자체 포함
- 신고농장에 대한 신속한 구제역 정밀검사 및 이동통제 철저
 - 특히, 농장주 및 종사자에 대한 외부 출입통제
-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확인에 대비하여 살처분·사체처리 준비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농장 사육가축 전체 살처분
- 청주시 전체 우제류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 시까지 이동제한 실시
 - 우제류 가축을 농장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다른 농장으로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 특히, 신고농장의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임상예찰, 추가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 철저
- 양성확진 시 청주 및 인접 시·군 7개 시군(세종, 대전, 보은, 괴산, 증평, 진천, 천안)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 실시(양성확진 후 48시간 이내)
 - 직전 접종 후 3주가 경과한 개체는 즉시 접종, 3주가 경과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신속히 접종
 - 담당공무원은 해당 농장들이 실제로 백신접종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병회수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할 것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과 함께 신고농장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역학조사에 따른 관련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방역조치(이동통제, 소독, 긴급 백신접종 등) 실시
- 위험성이 높은 차량(가축, 사료, 분뇨 운송)에 대한 관리를 위해 거점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소독필증 발급 등 방역조치
- 대상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
- 신고농장 내외부·기자재 및 청주시 관내 전체 농장·도로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공동방제단·광역방제기·군 제독기 등 방역 장비를 총 동원하여 집중 소독
- 신고농장, 인접 축산 밀집지역 및 주변 도로의 가축·차량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시군 간 경계 지역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축산관련 차량 등에 소독 실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예찰요원을 동원하여 청주시 전체 우제류 사육 농장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 충청북도 내 도축장에 소독전담관을 파견,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관리 감독

다. 전국 시도(시군) : 공통 방역 조치사항(충청북도 제외)

- 양성 확진 시 청주시 인접 시·군(대전, 세종, 천안)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 실시 및 임상검사 실시(양성확진 후 48시간 이내)
 - 직전 접종 후 3주가 경과한 개체는 즉시 접종, 3주가 경과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신속히 접종
 - 청주시 인접 시군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또는 방역본부에서 전화예찰
- 전국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소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장은 공동방제단,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하여 소독 철저
 - 특히, 도축장 출입(내외부, 바퀴, 내부 발 매트 등)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철저
- 관내 방역취약 농가(백신구입 저조, 항체양성률 미흡, 과태료 부과 등)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철저
 - 점검 결과, 백신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
 -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에 대한 지도·교육 및 홍보
- 축산농장에 가축, 사람, 차량 등 출입 시 소독 및 기록 철저
 - 특히,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 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

- 관내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활동 강화
- 유사시를 대비한 시군별 "가축전염병 현장기동조치팀" 재정비 및 자체 운영실태 점검

라. 농림축산검역본부

- 신고농장에 대한 신속한 구제역 검사 및 역학조사 실시
- 역학관련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
 - 타 시도 역학관련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하여 방역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구제역 백신 미접종 유형 발생에 대비한 항원뱅크 등 백신 긴급도입방안 준비
- 초동대응팀 파견을 통한 현장 방역지도
- 국경검역 강화
 - 휴대품 검색 및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강화
 - 남은 음식물 점검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조치

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화 예찰요원을 활용하여 예찰 활동 강화
 - 특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예찰요원을 동원하여 청주시 우제류 사육 전체농장에 대한 예찰 활동 실시
- 초동방역팀 운영·관리 철저

바. 농협경제지주

- 신고농장 주변에 철저한 소독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생석회 및 소독차량 등 지원
- 전업농가에 대한 백신 수급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사. 관련 협회(단체)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는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지도·교육 홍보 강화
- 회원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1588-9060, 1588-4060)토록 지도·교육 철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 기획재정부장관(농림해양예산과장), 외교부장관(재외국민보호과장),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 관세청장(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통정책과장), 국가정보원장, 해양경찰청장, 홍보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검역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지원과장, 동물복지정책과장, 방역정책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대한수의사회,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대한한돈협회, 한국중축개량협회, (사)한국흑염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주무관

이수범

사무관

조동호

구제역방역과 전결 2023. 5. 10.
장 김정주

협조자

시행 구제역방역과-3278

(2023. 5. 10.)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33

팩스번호 044-868-0469

/ lsb7937@mail.go.kr

/ 대한민국 공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